G - 47 - 2012

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2012.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대한기계학회 서상호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 제·개정 경과

- 2010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Camera operations on location: Guidance for managers and camera crews, HSE, 1997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5월 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촬영 작업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촬영과 관련된 작업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성 평가 및 촬영환경

촬영계획 수립시 사전에 촬영지 및 촬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촬영 지역의 인적·물리적 상황(사람들의 숫자, 위치, 지형 및 지역적 환경 등)
- (2) 촬영 시 비, 눈, 바람 등의 날씨변화 가능성
- (3) 촬영진의 이동경로

G - 47 - 2012

- (4) 긴급상황 시 촬영지로부터의 탈출 방법 및 탈출로
- (5)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소는 촬영진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유해위험 요소의 내용이 바뀔 때에는 신속히 촬영 관련자에게 알린다. 이때 중요한 유해위험요소는 기록해 둔다.

5. 촬영환경에서의 유해위험요소와 대응방안

- 5.1 무질서한 지역에서의 촬영
 - (1) 위험요소

많은 군중이 모여 있거나 혼돈된 상황에서는 촬영자가 자칫 군중에 떠밀리 거나 상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촬영진 모두가 촬영공간 확보와 진행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

- (2) 안전대책
- (가) 촬영자는 군중의 바깥쪽 안전한 장소에 위치한다.
- (나) 현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촬영위치 및 촬영목표를 신속히 변경한다.
- (다) 가능한 한 군중의 눈에 띄지 않게 한다.
- (라) 카메라 및 촬영장비의 노출을 가능한 한 피한다.
- (마) 촬영 현장이 비정상적으로 혼란하거나, 화재 등 긴급상황의 발생 시 신속 히 철수한다.
- (바) 촬영 관련 차량은 이동 가능한 곳에 주·정차 한다.
- 5.2. 화학적 유출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촬영

G - 47 - 2012

(1) 유해위험요소

촬영지가 가스, 증기 기타 유독성 화학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 및 관련 촬영진에게 유해한 질병을 야기 할 수 있다.

(2) 안전대책

- (가) 보호복, 호흡용마스크, 보안경 및 보호장갑 등 보호용 장비를 착용한다.
- (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유출 가능한 구역에서 가능한 한 떨어져서 촬영한다.
- (다) 바람의 방향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라) 유해물질에 오염 시 즉시 몸을 씻고, 응급처치를 받는다. 촬영 작업 관리 감독자는 사전에 응급조치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3. 조명을 이용한 촬영

(1) 위험요소

대부분의 촬영 시에는 조명기구를 사용하는데, 이를 잘못 다루거나 관리에 소홀할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사용하는 조명기구의 램프는 온도가 높아진다. 촬영 후 램프의 온도는 정상온도로 떨어지는데 시 간이 걸린다. 조명기구는 충격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2) 안전대책

조명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기구 설치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 조명기구를 관리자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나) 전체적인 촬영계획을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적절한 설치 위치를 선택한다.

G - 47 - 2012

- (다) 조명기구는 출입구 및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라) 조명기구의 받침대는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마) 램프는 고온으로 가열됨으로 램프 주변에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바) 조명기구와 연결된 케이블은 통행자에 의해 걸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누전이나 단락이 되지 않도록 연결부의 접 속상태, 외피 손상여부 등을 확인 한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조명 기구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 (사) 촬영 시 외에는 램프의 스위치를 꺼놓는다.

5.4 카메라 장비의 운반작업

(1) 유해위험요소

촬영자는 촬영지 내에서 무거운 카메라는 물론 다른 장비도 인력으로 옮겨다녀야 한다. 이러한 운반작업은 촬영자의 등, 목, 어깨 등에 위해를 야기할수 있다. 불편한 자세로 촬영을 장시간 지속할 시에도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안전대책

- (가) 운반작업 시 등을 곧게 펴고, 장비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는 이동시키는 물건을 가급적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한다. 발바닥은 바닥에 밀착시켜 안 정된 자세를 취한다.
- (나) 이동 시 무거운 장비는 가능한 한 운반도구 및 차량을 이용한다.
- (다) 무거운 장비는 엉덩이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비는 엉덩이 이상의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다.

G - 47 - 2012

(라)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장비는 분해 후 운반한다.

5.5 촬영 시 스트레스

(1) 유해요소

촬영작업 시 받는 촬영자의 스트레스에 의한 주요 유해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 긴 작업시간과 압박감
- (나) 촬영진과의 소통 부족
- (다) 작업 중 실수에 대한 불안감
- (2) 안전대책
- (가) 촬영자세를 급격하게 바꾸지 않는다.
- (나) 일정 촬영작업 후에는 신체적·심리적 회복시간을 갖는다.
- (다) 촬영작업 중 불필요한 지시 혹은 간섭 등은 삼간다.
- (라) 촬영작업 후 장시간의 운전은 피하게 한다.
- (마) 촬영 전 촬영 장소, 사용되는 장비, 촬영지 환경 등과 같은 정보를 카메라맨에게 충분히 알린다.

5.6 높은 곳에서의 촬영작업

(1) 위험요소

촬영 시 높은 위치에서 촬영 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는 촬영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촬영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발생한다.

G - 47 - 2012

(2) 안전대책

- (가) 작업에 충분한 상부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나) 안전한 작업발판이 확보된 전용 작업대를 활용한다.
- (다) 사다리를 오를 때는 두 손으로 사다리를 꼭 잡고 장비는 어깨에 매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해야 한다.

5.7 물가에서의 촬영

(1) 위험요소

촬영자가 특히, 혼자서 무거운 촬영장비를 옮기는 등 무게의 부담으로 인해 시각과 청각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물에 빠지는 등 위험상황 에 빠질 수 있다.

(2) 안전대책

- (가) 장비를 잘 갖춘 구조보트를 준비한다.
- (나) 보트 내에 앉을 때 안정성을 확보한 뒤 촬영 작업을 진행한다.
- (다) 물의 흐름이 빠르고 물 깊이가 깊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명조끼 및 장비를 준비한다.
- (라) 안전을 위해 촬영 전에 설정해 놓은 구역 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